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6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4. 25.

발의자 : 윤후덕 · 박상혁 · 김철민

박정 · 우원식 · 김정호

양경숙 · 홍기원 · 이동주

이형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필요한 경우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.

또한 군 숙소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함)이 「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위탁이 취소되어도 그 취소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수탁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, 위탁 취소 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수탁기관 지정 취소 결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

는 것임(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”를 “지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”을 “수탁기관”으로, “운영”을 “운영, 위탁 취소”로 한다.

②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
2.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3. 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

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</u> 지정의 기준·절차 및 <u>운영</u>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u>부당하게 된 경우</u></p> <p>③ <u>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수탁기관-----</u> -----<u>운영, 위탁 취소-----</u> ----- -.</p>
---	--